

# 中國 通關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趙宗柱\*

- 
- I. 序論
  - II. 稅關
  - III. 통관업무 취급기업
  - IV. 통관절차
  - V. 통관제도상의 문제점
  - VI. 結論
- 

## I. 序論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의 국가간 이동은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세관이라는 관문을 통하고 실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등 각종 법령에 무역에 관한 규제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내용을 실제로 확인, 집행하는 제도가 통관제도이다.

중국도 대외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을 위하여 해관법 등 법령을 통하여 수출입물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통관제도는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화물을 세관에 의하여 감독 관리되는 제도의 하나이다. 세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수출입상품의 내용과 무역회사의 권한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수출입허가증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 세관은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무역기업들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의 명세, 규격,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수출입화물 신고서를 받고 통관여

---

\* 昌原大學校 經商大學 貿易學科 講師.

부를 결정한다.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입 화물은 개봉되거나 인도, 위탁, 교환, 담보 또는 양도될 수 없으며 포장과 상표의 변경도 불가능하다.

통관제도는 '수출입화물을 세관에 통과시킨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통관제도를 이행하는 법제와 절차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관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통관제도에 있어서 물품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 통관의 주체인 통관업무 취급기업 그리고 통관절차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II. 稅 關

중국의 해관(세관)은 중앙 본부기구로서 국무원 직속인 中國海關總署가 전국의 세관을 감독·관리하고 관세정책을 책임진다.<sup>1)</sup> 전국에 34개의 세관이 있으며 廣東省 廣州市에 中國海關總署 分署가 설치되어 중국 전역의 관세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增值稅)와 소비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sup>2)</sup>

- ① 출입국하는 운송수단·화물·물품을 검사하고 법률위반 물품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 ② 출입국하는 사람의 증명서 검열, 위법행위의 협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심문, 그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다.
- ③ 출입국하는 운송수단·화물·화물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증빙서류, 기록, 문서, 업무용 우편물, 비디오테이프 등 각종 문건자료를 검열·복제하여 그중 위법한 운송도구·화물·화물과 관련된 것을 압류할 수 있다.
- ④ 세관 감독관리지역과 세관 부근 연해연변 규정지역에서 밀수협의가 있는 운송수단과 밀수화물·물품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고, 밀수협의가 있는 자의 신체를 검사하며 밀수협의가 있는 자를 사법기관에 압송할 수 있다.
- ⑤ 출입국하는 운송수단 또는 개인이 세관의 감독 관리를 거부하여 이탈 도

1) 中華人民共和國 海關法 제 2 조(1987년 7월 1일 시행).

2)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평민사, 1993, p.137.

피하는 경우, 그를 추적 체포할 수 있다.

- ⑥ 직무 집행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출입국 운송수단·화물은 세관의 감독 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출입국하여야 한다.

### III. 통관업무 취급기업

중국 海關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海關(세관)에 등록된 통관기업 또는 수출입기업이 통관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해관법 제6조). 세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여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sup>3)</sup>

- ① 무역전업총공사 및 지방 분공사
  - ② 수출입권한을 가진 공업·농업·기술무역공사
  - ③ 수출입권한을 가진 중앙과 지방의 무역공사
  - ④ 수출입권한을 가진 생산기업과 생산과 무역을 겸하는 기업
  - ⑤ 경제기술개발·기술도입·리스기업
  - ⑥ 지방정부 또는 위원회산하의 국제경쟁기술협력과 해외건설관련 기업
  - ⑦ 외국인 투자기업, 면세점, 외화상점, 화교상점
  - ⑧ 보세창고, 수입화물 애프터서비스 센타
  - ⑨ 세관이 인정한 중소 가공무역기업
  - ⑩ 국제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원조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입을 행하는 기구
  - ⑪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 이상과 같이 세관에 통관업무를 등록한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실질적으로 통관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 ① 등록기업은 통관업무 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은행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통관업무 등록증명서와 報關員證明書를 발급받아야 한다.

---

3)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1997, p.226.

② 소정의 자격시험을 합격한 報關員(관세사)<sup>4)</sup>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통관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통관업무 등록증명서, 報關員 證明書를 발급받은 후 報關員을 1인 이상 채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통관기업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전문통관기업은 전문적으로 수출입화물의 대리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반드시 XX 報關業, XX 報關服務公司라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둘째, 대리통관기업은 본래 수출입 경영권이 없으나,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위하여 대리로 대외무역보관운송, 국제운수기관, 국제운수기관서비스 및 대리 등의 업무를 경영하며 대리통관서비스를 경영하는 기업이다. 셋째, 자가통관기업은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영대형기업, 국영중형기업, 工貿·外貿·技貿會社 및 三資企業과 같이 직접 통관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 IV. 통관절차

중국의 화물통관 절차는 세관신고, 화물검사 그리고 통관허가의 과정을 거친다.

### 1. 세관신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입신고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의사를 세관장에게 표시하는 것이다. 수출입신고는 수출입지역의 해당 세관에서 해야되나 해당 세관의 동의하에 타세관에서도 가능하다.

4) 중국은 보관원이 실질적으로 수출입물을 통관시키므로 이들에게 일정한 자격조건과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격조건으로는, ①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연인, ② 소속기업은 수출입경영권, 대리운송, 창고보관업과 전문적인 통관서비스의 권리를 갖추고 또한 세관에 등록을 하여 세관이 발급한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③ 기업의 국내정식 고용원, ④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및 그에 상응하는 외국어의 능력보유, ⑤ 어느 세관에서든지 제명되거나, 사퇴 또는 한시적으로 세관에 전임된 사람은 보관원으로 충당할 수 없고, 한시적으로 세관에 전임된 사람은 3년 내 충당 불가능하다. 승인절차로 보관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조건에 합치하는 서류 및 보관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관원 훈련에 등록·참가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야 보관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위해서는 송화인(수출화물), 수화인(수입화물) 또는 그의 위탁대리인은 수출입신고서(進出口報關單)와 함께 수출입화물 허가증, 수입 품 선화증권, 수출품 선적증명서(송장) 등 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신고를 한다.<sup>5)</sup>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긴급히 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있는 화물의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여 우선 통관한 후 사후에 필요서류 등의 보완이 가능하다.<sup>6)</sup>

수출입신고 내용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연계서(聯系單) 2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량·총량·가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출입 신고를 취하할 사정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 취하수속(退關手續)을 해야 하며, 취하수속시 세관에서 허가한 수출입신고서를 반납한다.<sup>7)</sup>

수출입 신고서는 무역의 형태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일반무역용 백색, 가공무역용 분홍색, 외국인 투자기업용 연남색, 보상무역용 연록색 등이다.

수출입화물의 신고기한으로,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운송기구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화물을 선적한 후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해관법 제18조). 또한 우편화물은 수령인이 우체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세운송화물<sup>8)</sup>은 운송기관의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화물을 보세운송하여 지정된 운송지점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둘 중 하나에 따라 신고되어야 한다.

수입화물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화물의 도착가격의 5/1000을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수입화물의 수령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운송수단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그 화물을 임의로 매각할 수

5)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앞의 책, p.227.

6) 담보의 제공은 수입세와 관련비용의 합계와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중국내 법인을 담보인으로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세관의 규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날인한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실무 매뉴얼, 1999, p.33).

7) 한국무역협회, 앞의 책, p.32.

8) 보세운송통관은 1997년 천진항, 대연, 광주, 장가항, 산두 등 15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으며, 1997년 9월 “보세구역세관관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중국 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1998, p.94).

있다. 매각대금은 선적하역비용, 보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대금은 화물수령인의 신청에 의해 1년내에는 반환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해관법 제21조).

잘못 운송되었거나 초과 적화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 결정을 거쳐 원래의 운송기구 책임자나 화물수령인이 그 화물을 도착, 운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 또는 수입절차를 밟는다.

## 2. 화물검사

세관은 화물의 수출입신고를 접수한 후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유관단체에 통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게 한다.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내용의 일치여부, 불법 수출입의 방지, 관세징수 및 통계자료의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관의 화물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세관통제구역내의 창고, 즉 부두, 창고 또는 화물장치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수화인이나 수출화물의 송화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화물을 엎기고, 화물을 개봉하고 봉하는 것을 책임진다(해관법 제19조).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임의로 검사하고 재검사하거나 상품견본을 차출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세관지정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 즉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및 "Door to Door"용 컨테이너 화물은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한다. 또한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장하지 않은 화물(광물·곡물·원유·원목 등), 대량화물(화학비료·시멘트·설탕·철강재 등)과 위험물품은 선박의 선상에서 검사를 함으로써 통관절차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3. 통관허가

세관은 검사를 마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입면장에 날인한 후 해당 화물을 통관시킨다. 화주는 면장을 항구, 공항, 역 또는 우체국 등

9) 김성수·왕위·강규석·조연근, 중국국제기업거래법, 한국에너지법연구소, 1993, p.242.

운송부서에 제출하고 상품은 인수하거나 선적하게 된다. 세관은 수입화물인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부터 세관수속을 끝내기까지, 수출화물의 경우 세관신고에서부터 선박에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 국제연합운송화물은 국내로 들어와서부터 국경외로 나갈 때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수탁가공무역 화물의 통관에 관해서는 등록수첩(登記手冊)을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즉, 수탁가공무역 기업들은 먼저 업종별 주무기관이 발급한 수탁가공허가서, 수탁가공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 발행한 등록수첩을 받아야 한다.<sup>10)</sup> 등록된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 등의 수입과 그 가공품을 수출할 때마다 등록수첩과 수탁가공 수출입화물 보고서에 기록하여 세관에 보고한다. 따라서 수탁가공무역 기업들은 세관에 등록하여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거나 가공물품을 수출 할 수 있다.

일반 수출품목과 달리 수탁가공무역에 대해 통제를 엄격히 하는 것은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관세상 특혜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V. 통관제도상의 문제점

### 1. 보관원의 근무업체도용 대리통관

중국에서는 수출입회사라도 보관원이 없으면 통관수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대리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을 통관하고 있다. 자가 통관권이 있는 우리 수출입업체에 고용된 보관원들은 소속기업의 통관업무만 담당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위탁을 받아 통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위탁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 업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탁통관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 업체는 보관원의 관리태만으로 중국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1)</sup>

우리 업체들은 통관제도와 보관원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보관원의 불법적

10)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앞의 책, p.229.

11) 보관원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업은 통관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다.

## 2. 보세운송의 제한

중국내륙에 소재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항구 등에 도착된 수입원자재 등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업체 소재지로 보세운송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이 도착된 항구에서 직접 통관하게 됨으로써 원거리 출장 등으로 경비 및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또한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도착지 세관장의 보세운송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세운송 및 통관을 지연시키기도 한다.<sup>12)</sup>

중국의 통관규정상으로는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세관마다 세관징수목적을 달성하려는 실적경쟁 때문에 보세운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는 통관규정을 들어 세관책임자를 설득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3. 서류 및 상품통관의 2원화에 따른 수출지연

서류의 전달경로와 상품의 통관절차가 2원화 됨으로써 적기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컨대, 대련세관 관할구역에서 우리 현지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① 대련 본부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서류 통관한다. ② 대련항 주변 18개로 분산된 컨테이너 야드 관할 세관에서 상품을 통관시킨다. ③ 외국기업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이 직접 선적, 양육되는 대요항(大窯港) 세관에 가서 선적수속을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본부세관이 발행한 세관봉인이 문서전달경로를 거쳐 관할지 세관으로, 다시 대요항 세관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일정량의 수출물품이 모아져야만 발송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처럼 수출절차를 알아도 통관하기가

12)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 주요국의 국별 통상환경 종합보고서-, 1999, p.110.

힘든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적기에 선적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 4.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수입물품의 세관 수입신고기한을 제한하고 동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신고 기한은 수입화물 운송선박의 세관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내륙지로 보세운송되는 경우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물 도착가격의 1,000분의 5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sup>13)</sup>

#### 5. 통관지연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빈발하고 있다. 지역간 세관직원에 따라 통관기준이 상이하고, 통관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통관관련 내부규정이 많아 규제를 당할 경우 규정에 적합한 조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조치인 경우에도 항변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세관직원과의 관계에 따라 원활한 통관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세관의 컴퓨터 입력요원의 부족으로 입력이 지연됨으로써 통관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sup>14)</sup>

한편 세관의 근무시간이 짧음으로 해서 통관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관근무시간외라든지, 금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담당자 부재시에는 대리 근무자가 없어 일처리가 중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들은 해당지역의 통관업무와

13)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가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14) 외교통상부, 앞의 책, p.111.

통관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또한 중국의 통관관습을 알고 이에 대응해야 하겠다.

## 6. 미통관수입화물에 대한 재수출절차요구

중국은 수입되는 화물을 수입자가 수입을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관되지 않는 화물에 대하여 일단 중국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외국으로의 재수출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통관료와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미통관화물을 수입후 재수출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자체통관료와 수수료 지급은 국제적인 상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 V. 結論

무역기업이 수출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통관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도 통관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① 우리 수출입업체에 고용된 보관원이 타 업체를 위하여 위탁통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업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탁통관하고 있다. ② 중국의 통관규정상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관이 징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③ 통관서류의 전달경로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가 2종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출선적이 지연되는 문제이다. ④ 중국의 세관은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체금을 도착가격의 1,000분의 5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입신고기간을 30일로 하고 있고 지체금의 경우도 과세가격의 100분의 2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수입신고기간도 한국보다 짧고, 지체금도 높다는 것이다. ⑤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빈발하고 있다. ⑥ 미통관수입화물에 대하여 중국 세관은 수입절차를 밟고 재수출을 하도록 요구하므로써 자체 통관료와 수수료를 지출케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중국이 무역정책 및 무역제도를 국제관례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여 투명성이 결여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규정이 많고, 갑자기 관련규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

아 규제를 당하면서도 적합한 조치인지 확인이 곤란하다. 또한 법 및 규정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해석이 서로 다르거나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문제들은 법개정이나 통관관련 실무자들의 인식전환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업체들은 중국의 통관법규와 통관관습을 숙지하여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1987년 7월 1일 시행).
-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평민사, 1993.
-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1997.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실무매뉴얼, 1999.
- 한국무역협회, 중국 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1998.
- 김성수·왕위·강규석·조연근, 중국국제기업거래법, 한국에너지법연구소, 1993.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 주요국의 국별 통상환경 종합보고서-,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China Customs Clearance  
System

Jo, Jong Ju

Customs clearance is one of systems controlled by a customhouse that administrate all exported or imported goods passed frontier. This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china and korea equally means, but it find obvious that customs law and rule, customs formalities between china and korea differ greatly. Therefore, this article describes a customhouse controlling exportation and importation, company dealing clearance service as the subject of customs clearance and customs formalities in order to generally analyse on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China. As a result, this seeks for problems of customs clearance systems in China and a means of settling a trouble.

Key Words : China, customs clearance systems, customs formalities, customs law and rule, customhouse.